## 항소권포기서

사 건 20ㅇㅇ가합ㅇㅇㅇ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20〇〇. 〇. 〇.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,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관 련 조 문	민사소송법 제394조, 제
			395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, 상대방     비 용 은	] z] બો· ○ ○ ○ ⊝] (r-	=미시저스사르에 브이 이기애\
	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함. 항소를 한		
기 타	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짐(민사소송법 제395조		
	제2항, 제3항).		
	· 항소권의 포기는 불이익한 판결에 대하여 그 심사변경을 구할 이익		
	이 있는 항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		
	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		
	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		
	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		
	임(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728 판결).		
	· 항소제기 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		
	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와는 달리 항소심판결의 선고시까지		
	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항소권포기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		
	하였다 하여도 같은 서면이 기록에 편철되어 항소법원에 도착되면		
	그때 항소권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음		
	(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다카659 판결).		

## ※ (1) 관할법원

- 1.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.
- 2.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.